#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82

발의연월일: 2025. 2. 4.

발 의 자 : 김 윤・양문석・문대림

김문수 · 이수진 · 이재관

권향엽 · 강득구 · 한창민

이재정 · 정진욱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일정 한도 이내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고 있음에도, 해당 준비금이 실제 고유목적 사업에 부합하도록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및 제92조제1항제6호 신설).

#### 법률 제 호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2조의2(회계감사) ① 종합병원 개설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1회이상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종합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감사보고서
  -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내역, 전입내역, 사용내역, 사용계획 등 이 포함된 명세서와 그 부속서류
  -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일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2조의2(회계감사) ① 종합병원 개설자는 「공인회계사법」 제 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 연도별로 1회 이상 받아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종합병원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사보고서 2.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변동내 역, 전입내역, 사용내역,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명세서와 그 부속서류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병원 개설자가 연속하는 4개 과세기 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동 일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제9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92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신 설>

② ~ ④ (생 략)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 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 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 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 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업무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회계감 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계감사 및 감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렁으로 정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 6. 제6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 ② ~ ④ (현행과 같음)